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1 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문진석・박정현・이병진

김선민 • 남인순 • 윤종군

이연희 · 서영석 · 이정문

김준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,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.

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,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.

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·유통·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18조의2 신설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8조의2(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) ①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, 물건, 도화, 휘장, 영상, 마스코트 등 상징물(이하 "욱일기등"이라 한다)을 국내에서 제작·유통·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욱일기등을 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·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,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, 연구, 보도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제작·사용·착용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벌하지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118조의2(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) ① 기본질서를 위용 금지 등) ① 기본질서를 위대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, 물건, 도화, 휘장, 영상, 마스코트등 상징물(이하 "욱일기등"이라한다)을 국내에서 제작·유통
	·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욱일기등을 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·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기본질서를
	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, 공연 또는 전시에

사용하거나 교육, 연구, 보도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제 작·사용·착용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